

『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4월 3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5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5월 13일

제1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석 동

나. 제안이유
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「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가 제·개정됨에 따라,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도시미관을 도모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신설(안 제7조)
-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)

- 광고물 등 정비시범 구역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)
-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에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포함(안 제6조)
- 관광지 등 일정구역에서 간판에 외국어 병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
- 옥외광고업자 교육시 사이버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)
-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(안 제24조제3항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 - 「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
- 입법예고 : 2013. 3. 20 ~ 4. 9(20일간)(의견없음)
- 구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.(2013.4.16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□ 본 ‘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’ 은,
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「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의 제·개정에 따라, 상위법령 및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,
- 그 주요내용으로는,
 -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간소화.
(원색사진, 설명서 및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은 제외)

-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.
(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같음)
-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및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규정
- 주민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~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.
- 사업비 및 예산지원, 광고물 디자인 등이 포함된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.
-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는 관광지 등 일정하게 지정된 구역에서 광고물 심의규정에 맞게 표기.
- 안전점검 업무 위탁자의 자격, 기준, 위탁절차 등을 명기.
- 기타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의 위탁,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, 옥외광고업 등록관리 및 종사자 교육, 교육 위탁, 수수료 기준,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였음.

□ 위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안이 전부 개정되어 있으므로,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